

감사위원회 규정

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,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 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 및 제 3 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제 1 항의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장이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장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종 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.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외부감사인(이하 “감사인”이라 한다)의 선정 및 변경,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-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
 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 - (5)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- (6) 이사회 소집청구 및 직접 소집

3. 감사에 관한 사항

- (1) 업무. 재산 조사
- (2) 자회사의 조사
- (3) 이사의 보고 수령
-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- (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
- (6) 감사인 선정 및 변경. 해임
- (7)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
- (8)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
- (9) 연 2 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.
단, 상반기 운영평가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고, 내부회계관리제도나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등을 전면 개편하는 경우에는 연 1 회 기말에만 평가 및 보고를 할 수 있다.
- (10) 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·개정
- (11)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·개정
- (12)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
- (13)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(14)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(15) 위원회 지원조직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

제 11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감사인의 선임 등

제 13 조(선임)

- ① 위원회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미리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외감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 제 13 조 4 항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그 세부기준은 <별표 1>, <별표 2>에 의한다.
- ⑤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외감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
 - 2.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, 참석자 인적사항, 주요 발언내용 등

제 13 조 2(감사인과의 연계)

- ① 위원회는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

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감사상황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인과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감사인의 변경)
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(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)
- 2.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- 3.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4. 기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제 15 조(감사인의 해임)

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2.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- 3.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
- 4.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
- 5.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·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

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

6. 외감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감사인이 동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
제 16 조(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)

-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(이하 “전기감사인”이라 한다)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 15 조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체결 2 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
 2.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
 3. 위원 전원이 제 1 호 및 제 2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

제 17 조(독립성 확보)

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제 18 조(의견교환)

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제 19 조(위원회 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위원회 지원조직을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지원조직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 지원조직은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 지원조직은 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하며,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주주총회에의 보고)

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21 조(감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22 조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2003년	2월	21일	제정
2010년	3월	12일	개정
2012년	5월	16일	”
2019년	2월	26일	”